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3-03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9누6215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 A

2. B

3. C

4. D

[redacted]

피고, 피항소인 1. [redacted]시장

2. [redacted]시장

3. [redacted]시장

제 1 심 판 결 [redacted]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9구합11083 판결

변 론 종 결 2019. 11. 20.

판 결 선 고 2019. 12. 1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3-03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redacted]시장이 2018. 9. 13. 원고 A에 대하여 한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피고 [redacted]시장이 2018. 10. 16. 원고 B에 대하여 한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피고 [redacted]시장이 2018. 9. 18. 원고 C, D에 대하여 한 각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3-03

판사 박재우

판사 박해빈